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합101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함평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박석원

피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변론 종결 2019. 12. 10.

판결 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880,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B 일대에 C주택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37,57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1. 28.부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5,890,393,000원, 공사기간을 2013. 11. 28.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12. 24.부터 2015. 12. 1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공사대금 5,890,393,000원 중 보험료 정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773,682,25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2017. 10.경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24,880,207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임에도 피고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

다. 거듭 양보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임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 만약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체결했을 리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수정해석에 따를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524,880,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면서도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가 면제대상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와 국가 사이의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이 별도의 취소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함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공사대금액 결정의 동기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3. 1.경부터 이미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장애인 임대주택의 1세대당 면적을 85㎡ 또는 86㎡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개입찰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13. 11.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약 10개월 전부터 위와 같이 장애인 임대주택의 1세대당 면적을 확정하고 있었으므로, 관계 법령을 직접 찾아보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공사계약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끝내 인지하지 못한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착오를 일으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착오에 빠져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결과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를 탐구하여 법률행위의 공백을 보충하여야 하는 경우와는 서로 사안이 다르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쌍방의 착오로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어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존재하는 약정을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들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자재나 인력 공급업체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하였다거나, 위 약정을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은설

판사권노을

판사김유신